

【 주간이슈 】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상우 선임연구원

-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관련법률에서 적합성 원칙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로서 가입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됨.
 -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출혈경쟁 및 과열 경쟁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적합성 원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입자(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여 퇴직연금의 불건전 판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현재, 관련 법률에서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을 제시한 금융투자협회의 해설지침(Q&A)만이 존재함.
 -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고,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보호대상 범위가 모호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가입자(기업 및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가장 적합한 운용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퇴직연금의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퇴직연금을 법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은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일반투자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퇴법상의 운용방법 제시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개념을 포함시켜 구체화하고, 향후 근퇴법 개정에 대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 모색이 바람직함

1. 검토 배경

- 최근 퇴직연금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간의 퇴직연금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등으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¹⁾를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퇴직연금이 급속하게 증가²⁾하고 있으며, 2010년 퇴직 보험(신탁)제도 신규가입 폐지 및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2011년부터 가입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등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에 확정급여형제도의 가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록 확정기여형제도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에 반해 퇴직연금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이 확대되면서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고금리 제시³⁾ 및 구속성 예금 유치⁴⁾ 등과 같은 과열경쟁 및 불건전 거래가 일부 금융회사에서 나타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가 우려되는 실정임.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규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퇴직연금제도(2005.12월) 시행된 이후 자본시장법(2007)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가 법률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음.
 - 또한, 퇴직연금이 금융제도가 아닌 퇴직급여제도이다 보니 투자자로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퇴직후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자금으로 투자되어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반투자자 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책임을 지는 기업(확정급여형제도)과 근로자(확정기여형제도)를 편의상 가입자로 호칭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가입자인 기업 및 근로자는 각각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예적금, 금리연동(확정형)상품,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펀드에 가입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투자 운용이 가능하여 투자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됨.

2) 389개 사업장, 5,024명(2005.12) → 83,160개 사업장, 1,837,445명 가입(2010.9말)

3) 황성관, 『퇴직연금시장 공정경쟁 정착을 위한 제언』,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p.9, 2009. 9.

4)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CEO Report 2009-4), 보험연구원, p.8, 2009.10.

-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안전하고 높은 수익의 운용상품에 가입하려는 속성과 금융회사 등의 경우 근로자에게 수수료 수준이 높은 운용상품 위주로 제공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현방법이 근거법상에서 미흡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거래의 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적용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적합성 원칙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가. 적합성 원칙의 기원과 개념

- 적합성 원칙은 1930년대의 불법적 증권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간판이론(shingle theory)에서 유래된 개념임⁵⁾.
- 간판이론은 증권중개업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브로커·딜러가 증권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고객에게 성실하게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묵시적인 표시(implied representation)를 하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증권중개업의 간판을 내 걸어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resonable basis)를 기초로 투자권유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이론임.
-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은 미국의 증권거래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증권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가 아니면 고객에게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함.
- 즉,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권유 개념을 의미하는 것임.
-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투자자의 정보 수집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투자자가 정보수집을 거절할 경우 적합한 투자권유가 불가능하므로 이 원칙은 성립하지 않음.

5) 이상우,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p.61, 2008.3

-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합한 투자상품의 권유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합성 원칙이 필요함.
 - 따라서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반하는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나. 적합성 원칙의 근거와 위반 효과

-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하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함.
 - 첫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투자자 분류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차별성을 둠.
 -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 중앙은행,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등 이외의 투자자를 말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평가를 받을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됨.
 - 둘째,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확인받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정보의 파악 및 확인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를 부여함.
 -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품의 적합성 판단의무를 부여함.
 - 적합성 원칙과 별개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명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중요한 사실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부여함(법 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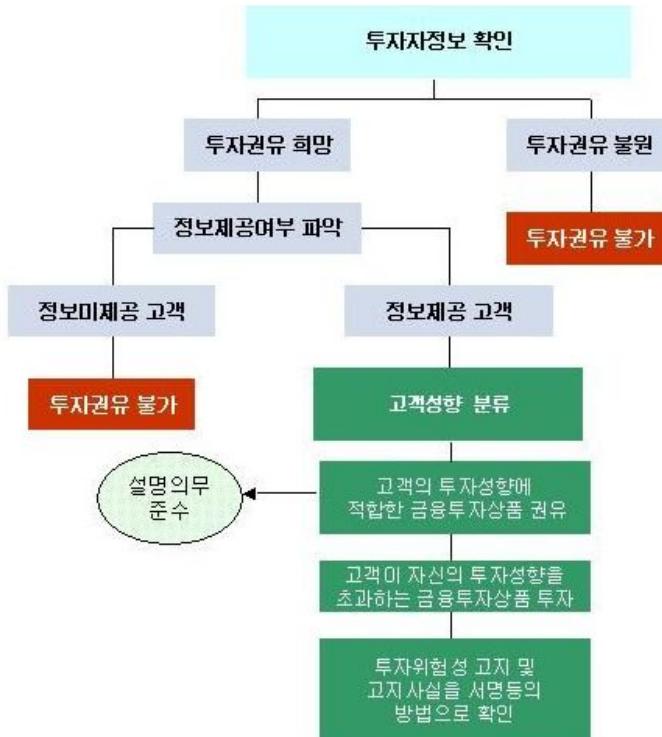
<표 1> 자본시장법령상 적합성 원칙 규정

구 분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투자자 분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 원칙 등(제4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가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투자자의 범위(제10조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금융위원회에 전문투자자로 신고한 법인 등
적합성 판단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 원칙 등(제46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 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자 정보파악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 원칙 등(제4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 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법 제46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사항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

-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 해설지침(2009.2.12)'의 내용 중 Q&A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즉,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사업자를 상대로 적합성을 확인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수익자인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고객정보 확인을 하고 적합한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한다고 답변함.

<그림1> 투자상품의 적합성 원칙 적용 흐름도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만,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성 원칙의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해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법률적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⁶⁾되고 있음.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키코(KIKO) 소송에서 2009년 법원⁷⁾은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고객에게 충실히 이해시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

6)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입법과제, 한국보험학회, p.95, 2010.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2.30 선고 2008가합3816, 20094.24. 선고 2009카합242 결정

- 또한, 2010년의 키코 소송에서 법원은 키코에 대한 은행의 불공정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은행측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위반한 것으로 판시함.

3.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요의 필요성

- 퇴직연금 가입자(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용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여 퇴직연금의 가입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률상 “기업 또는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운용방법(금융상품)제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권유행위가 수반됨.
-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투자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거나, 낮은 학력수준에 있는 근로자에게 원금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적립금 대부분을 투자 권유하여 손실을 입힐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함.

<표 2> 균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① 사용자(기업) 또는 가입자(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운용방법(금융상품)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② 연금제도설계 및 계리 ③ 적립금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④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① 계좌의 설정 및 관리 ② 부담금의 수령 ③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함)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⑤ 퇴직급여의 지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퇴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적합성 원칙의 위반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특히, 상술한 금융투자협회의 Q&A만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으며, Q&A상에서 적용대상⁸⁾이 불명확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계약주체와 자산 운용에 대한 위험부담 책임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⁹⁾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계약주체와 위험부담 주체가 일치함.
 - 반면 확정기여형제도는 기업이 계약체결의 주체이지만 운용상품의 권유받는 사람과 적립금 운용상의 책임을 개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계약주체와 운용책임(투자권유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함.
 - 비록 계약주체가 아닌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절차를 부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성실의무, 주의의무, 법규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운용상품 제시시 불완전 판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가 미흡함.

<표 2>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상품 제시시 의무 및 금지사항

법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p>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p> <p>1. 운용방법 정보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운용결과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DC, IRA의 경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p>	<p>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p> <p>1. 계약체결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특별한 이익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개인정보를 업무이외에 유출하는 행위 4.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p>

- 근퇴법에서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행위” 등이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상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향후 소송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단계에서 실적배당형인

- 8) 확정급부형의 경우 적용대상을 ‘사업자’를 지칭하고 있으나(표준투자권유준칙 해설, p.17, 2009.2.12). 자본시장법에서는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을 ‘일반투자자’로 지칭하고 있음.
- 9) 확정기여형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투자운용과 이에 따른 위험부담의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투자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됨.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등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단순하게 제시하는 행위에서 권유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행위가 권유행위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못함.

-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¹⁰⁾은 투자권유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시행위가 동 법의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의 Q&A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투자권유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한편, 근퇴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보험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에게 퇴직연금 모집 및 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권유업무를 도입할 예정임.
-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모집인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권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비한 적절한 가입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4. 적합성 원칙 도입 방향

-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법적근거 미비, 적용대상 주체, 운용방법 제시의 명확성, 근퇴법 개정(안) 대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및 위반시 제제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퇴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즉, 퇴직연금업무의 구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실제 가입권유 대상, 권유행위 제공 유무 등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

10)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법 제9조 4항)”

- 또한,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투자자분류, 투자자정보 파악 및 확인, 적합성 판단 의무 등을 명시한 규정이 필요함.
 - o 또한, 근퇴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퇴직연금을 법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적립금 운용시 투자권유행위가 제공되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법제46조)의 입법례에 대한 준용규정을 근퇴법에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은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 규정에 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o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적은 일반투자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o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비상장기업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계약주체와 위험부담 주체가 다른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퇴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운용방법 제시’나 ‘투자권유’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거나 또는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를 제한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행위를 동법의 투자권유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권유의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o 또는 근퇴법상 ‘운용방법 제시’ 업무를 투자권유가 있는 운용방법 제시와 투자권유가 없는 운용방법 제시 업무로 구분하여 향후 선진국형 기본펀드(default fund)¹¹⁾ 등 투자권유행위가 제공되지 않는 운용상품의 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종사자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는 근퇴법 개정(안)에 대비하여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11) 기본펀드는 가입자가 투자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본적인 운용상품으로 운용되어 정부나 민간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에서 유사제도를 도입함.

-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이직·퇴직 등으로 인한 적립금 이전 근로자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법률 개정으로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화물기사, 택배원, 방송작가, 연예산업 등)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도 확정기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므로 개별 근로자 및 자영업자, 특수직역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